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29호, 2009. 5. 13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염화비닐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가소제성분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고자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염화비닐수지(PVC)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[제7. 2. 1. 1-1]

(1) 합성수지제의 유연성을 주기위해 사용되는 가소제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규격이 필요함.

(2) 염화비닐수지제에 대해 디부틸프탈레이트, 벤질부틸프탈레이트, 디-n-옥틸프탈레이트,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,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,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

(3) 식품용 기구로 사용되는 염화비닐수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

※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중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30호, 2009. 5. 13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관리체계 도모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공하고 안전성에 관한 자료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중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를 명확히 함(안 별표 2).